

# 전임지도자 운영규정

제 정 2017. 9. 13.  
개 정 2019. 2. 14.  
개 정 2019. 3. 07.  
개 정 2020. 10. 29.  
개 정 2021. 2. 15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대한장애인체육회 (이하 “장애인체육회” 라 한다) 해당 경기단체 전임지도자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목별 선수 양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대상)** 이 규정은 경기단체에서 선임하는 해당 경기단체 전임지도자(이하 “전임지도자” 라 한다)에 대하여 적용한다.

**제3조(채용절차)** ① 전임지도자는 해당 경기단체의 공개채용에 의해 전문체육위원회의 평가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단체장이 채용하고, 경기단체장은 채용결과를 대한장애인체육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'19.2.14.>

② 공개채용 시 경기단체는 해당 시·도장애인체육회에 공문으로 공지해야하고, 해당 경기단체 홈페이지에 최소 10일 이상(공휴일 포함)의 채용 접수기간을 두어야 한다.

③ 경기단체는 채용하고자 하는 전임지도자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경기단체에 그 사실 유무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. 다만, 동일 종목의 비장애인경기단체에 대해서는 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. <신설 '19.2.14>

**제4조(자격요건)** 전임지도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 <개정 '19.2.14.>

1.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<신설 '19.2.14.>
2.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7년 이상의 선수경력 또는 5년 이상의 장애인 경기지도 경력이 있는자 <신설 '19.2.14.>
3.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7년 이상의 선수경력 또는 5년 이상의 장애인 경기 지도 경력이 있는자 <신설 '19.2.14.>
4. 해당 종목 국가대표 은퇴자로 2급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

패럴림픽 대회 1회 이상 출전 또는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자 <신설 '19.2.14.>

**제5조(채용결격사유)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전임지도자가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,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7. 장애인체육회, 가맹단체, 시·도장애인체육회,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
8. 장애인체육회, 가맹단체, 시·도장애인체육회,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(단, 승부조작, 폭력·성폭력, 횡령, 배임, 편파관정으로 장애인체육회, 가맹단체, 시·도장애인체육회,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(시도지회 및 회원종목단체 포함)에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는 영구히 지도자에 선임될 수 없다) <개정 '19.3.7.>
9. 장애인체육회, 가맹단체, 시·도장애인체육회,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승부조작, 직권남용, 사익추구 등의 비위 또는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자
10. 장애인체육회, 가맹단체, 시·도장애인체육회,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「형법」 제314조 및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
11. 장애인체육회, 가맹단체, 시·도장애인체육회,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성추행, 성희롱 등 성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지도자 중 자격정지를 받고 징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. 단, 5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은 자는 영구 결격
12. 장애인체육회, 가맹단체, 시·도장애인체육회,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

등 체육단체에서 승부조작 기타 부정행위(부정선발, 담합, 금품수수 등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.)와 강간,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행위로 징계를 받은 자는 영구 결격

13.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
14. 부정부패 또는 비리 등의 행위로 퇴사하거나 징계 등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
15. 가맹단체(시도지부 포함)의 회장, 부회장, 전무이사의 경우 전임지도자를 겸직할 수 없고, 상기 직위를 사임한 경우라도 사임 후 2년 동안은 전임지도자로 선발될 수 없음

**제6조(직무)** 전임지도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
1. 해당 경기단체의 국가대표, 꿈나무, 신인 및 후보선수 발굴·지도 육성에 관한 업무 <개정 '19.2.14.>
2. 국가대표, 꿈나무, 신인 및 후보선수 훈련계획서 작성 및 선수별 훈련성과 평가 <개정 '19.2.14.>
3. 해당 경기단체의 국가대표, 꿈나무, 신인 및 후보선수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<개정 '19.2.14.>
4. 해당 종목의 국내·외 대회 경기력 분석업무
5. 전임지도자 사업수행의 실적 등 보고에 관한 업무
6. 기타 장애인체육회 지시사항 및 경기력향상과 관련된 제반업무 이행

**제7조(경기단체의 임무)** 경기단체는 해당 전임지도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.

1. 해당 전임지도자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업무
2. 해당 전임지도자 관리, 업무 평가 및 지휘·감독 업무 <개정 '19.2.14.>
3. 기타 전임지도자에 관한 제반 업무

**제8조(채용계약)** 전임지도자의 채용계약은 다음과 같다.

1.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'19.2.14.>
2. 연맹은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소정의 채용절차를 거쳐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 <개정 '19.2.14.>
3. 전임지도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복무규정을 현저히 위반할 경우 해당 경기단체 전문체육위원회 심의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<개정 '19.2.14.>
4. 전임지도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면직하거나 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어 새로운 지도자로 교체할 경우 계약기간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5. 연간 업무 평가결과는 향후 전임지도자 계약 시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.

**제9조(복무)** ① 전임지도자는 지도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성실의 의무
2. 친절·공정·청렴 의무
3. 품위유지 의무
4. 비밀엄수 의무
5. 직장이탈금지 의무

② 전임지도자는 해당 경기단체 회장 및 경기단체의 지휘감독을 받아 지정한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하고, 경기단체는 매월 근태관리 결과를 장애인체육회로 보고하여야 한다.

<개정 '19.2.14.>

③ 전임지도자는 선수육성에 관하여 장애인체육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문 및 지원요청에 응하여야 한다.

④ 전임지도자는 원칙적으로 타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, 장애인체육 유관단체(경기단체 등)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.

⑤ 전임지도자의 세부적인 복무에 관한 규정(징계규정 포함)은 해당 경기단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는다.

⑥ 전임지도자는 계약기간 중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그 직무를 정지한다.

⑦ 전임지도자는 계약 기간 중 장애인체육회 및 경기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성범죄 및 폭력 관련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.

**제10조(급여)** 전임지도자의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.

1. 급여의 지급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한다.
2. 급여의 지급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.
3. 급여의 지급일은 경기단체 규정에 준한다.

**제11조(복리후생)** 전임지도자 활동에 관한 각종 복리후생비(각종수당, 교통비 등)는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경기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**제12조(근무시간 및 근태)** 근무시간은 해당 경기단체 복무규정에 준한다.

**제13조(월별 업무추진 실적 및 월별 훈련계획)** ① 전임지도자는 월별 업무추진 실적은 익월 10일까지, 월별 훈련계획은 전월 25일까지 소속 경기단체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고, 장애인체육회에서 개최하는 월 보고회 등에 참석하여야 한다.

<개정 '19.2.14.>

② 경기단체는 월별 업무추진 실적과 월별 훈련계획을 검토하여 즉시 장애인체육회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'19.2.14.>

**제14조(포상)** 전임지도자의 직무에 현저한 업적이 있거나 업무성적이 우수한 경우, 경기단체장과 장애인체육회장은 포상 할 수 있다. <신설 '19.2.14.>

**제15조(성과평가)** 이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전임지도자에 대한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지침은 장애인체육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
**제16조(전임지도자 운영규정의 제·개정)** ① 전임지도자 배치 경기단체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전임지도자 운영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한다.

② 경기단체의 전임지도자 운영규정에 반드시 전임지도자 채용, 복무, 관리, 평가에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

③ 경기단체에서 제·개정된 전임지도자 운영규정은 제·개정 후 즉시 장애인 체육회에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'21.2.15.]

부 칙('17 .09. 13.)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'19 .02. 14.)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① 제4조 제1호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제4조 제2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③ 제4조 제3호에 관한 사항은 2021년 12월 31일까지, 제6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'국가대표'에 관한 사항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 <개정 '20.10.29.>

부 칙('19 .03. 07.)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정관 개정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'20 .10. 29.)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'21. 2. 15.)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